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드명	(변경 전) 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	(변경 후) 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정정서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정사유	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-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효력발생일	2026년 04월 01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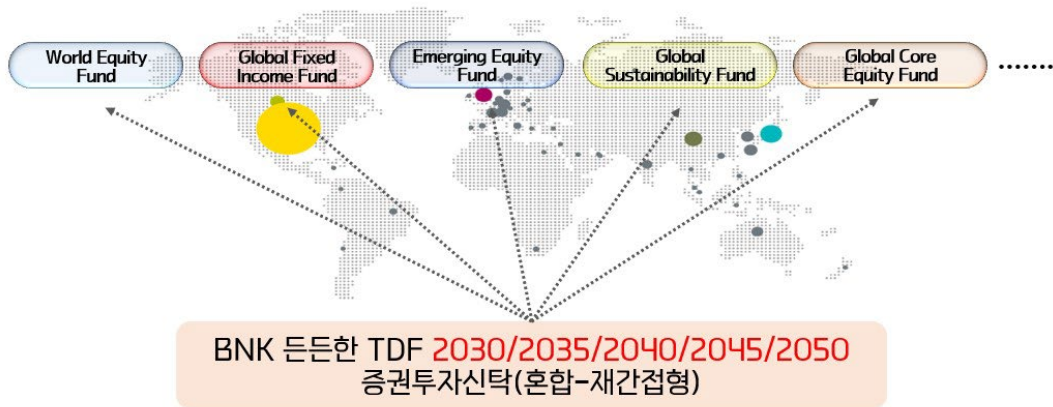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-	- 2026.04.01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(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→BNK든든한적격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),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	가. ~ 나. (생략) 다. 재간접형 구조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재간접형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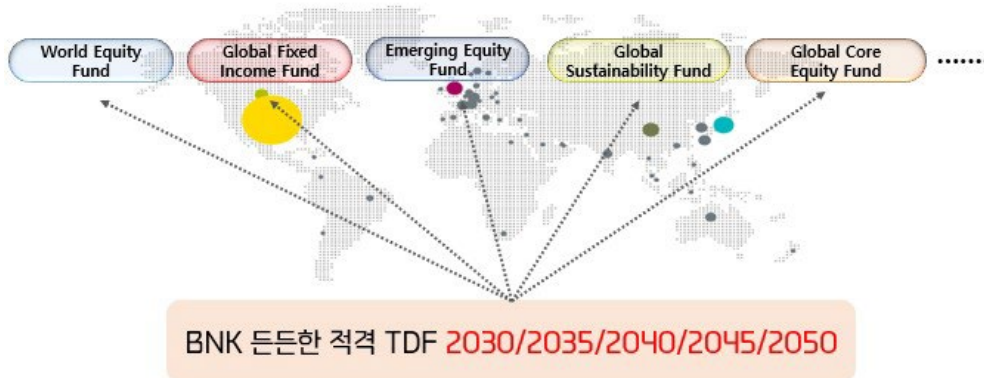
	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(UCIT Fund)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u><그림 1></u>	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(UCIT Fund)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u><그림 2>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세칙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증권(60%이상)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집합투자증권 등"이라 한다) - <u>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. 다만, 2035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 -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 <u><신설></u> ②~⑪ (생략) 나. ~ 다. (생략)	가.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증권(60%이상)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집합투자증권 등"이라 한다) - 「 <u>금융투자업규정</u> 」 제5-23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상으로 하고, 2035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-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 - <u>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80%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80% 이내로 한다.</u> ②~⑪ (현행과 동일) 나. ~ 다. (현행과 동일)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<신설> <신설> (2) ~ (3) (생략) 나. (생략)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-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. [5년 단위별 자산배분 목표 비중] <표> (2) ~ (3) (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 적격 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<그림 1>



<그림 2>



<표>

[5년 단위별 자산배분 목표 비중]

구분	BNK든든한 적격 TDF2035	
	위험자산	안전자산
자산비중		
목표시점		
2021(설정시점)	62.10%	37.90%
2025	51.50%	48.50%

2030	38.25%	61.75%
2035	25.00%	75.00%
2040	25.00%	75.00%
2045	25.00%	75.00%
2050	25.00%	75.00%
2055	25.00%	75.00%
2060	25.00%	75.00%

<끝>.